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2002. 10. 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9. 28.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 9. 28.
- 다. 상정일자 :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2002. 10.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公衆利用施設)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되는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기금의 재원은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2) 기금의 용도는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5조)
- 3) 기금은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두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구의원,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함.

5) 심의회의 기능은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6)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하고, 기금의 용자절차, 용자한도액 및 용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7) 시설주가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를 보면 동 기금조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1999. 1. 21법률제5672호)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과 구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과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규정하여 용자와 보조대상 시설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용자금 및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주에 대하여 관계 서류나 사업내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법 제9조에서는 시설주에게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먼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활성화 시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2001년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이래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동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제정이 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복지시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편의시설 설치 대상업소가 미설치 시 부과함.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관공서, 교회,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이행강제금의 배분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50 %는 서울시 기금이며 50 %는 마포구 기금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우리구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총 1,775개소중 1,420개소는 설치 하였으며, 355개소는 미설치 되었음.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기금조성 기간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조례 공포후 1년 정도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기금조성 가능액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구의 출연금이 1억원 정도이며 이행 강제금의 부과액은 예측할 수 없음.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기금 용자시 상환 기간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후 심의 사항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이 조례가 우리구만 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 제정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것.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명심하겠음.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미부과한 것인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최근에('99. 1. 21)법 제정이 되었으며, 미시설된 사업주에게 설치기간을 최대한 주고 설치토록 홍보 하였음.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우리구는 노인시설 및 복지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함. 이번을 기회로 장애인들에게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열심히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
2.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동) ①기금은 구청장이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동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동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동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동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7조 (기금운동심의회)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 및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심의회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심의회회의 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

②기금의 용자절차, 용자한도액 및 용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용자·보조금의관리) ①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및 보조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설주가 용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 재	담당	과장	국장
				결 재			
				협 조			
				결 재			
				협 조			
				결 재			
				협 조			
				결 재			
				협 조			
				결 재			
				협 조			